

스웨덴의 防産수출정책과 市場전략

● 朴成男 / 국방부 사업관리관실
공군 중령

무역수지 측면에서 스웨덴의 무기수출량은 연간 약 7천2백억원 정도이며, 이것은 전체 민간수출량과 비교할때 큰 부분이 아니다. 고용에 관한 논쟁도 스웨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약 3만명이 직접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근로자의 10%, 전체근로자의 1%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다른나라의 군사적인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2개의 초강대국이 포함된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통계적으로 볼때 지난 20여년 동안 스웨덴 정부는 매년 현존하는 전체 독립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40개국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였다

최근 몇년동안의 몇몇 사건들은 스웨덴의 방산수출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방산수출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태도와 법령에 대해 약간의 오해를 유발시켰다. 다음은 이를 위해 <Miltech>誌 기자가 군사물자 검사소장인 Seven Hirdman 대사와 대담(對談)을 한 내용이다.

Hirdman 대사가 소장으로 있는 군사물자 검사소는 전쟁물자 생산을 통제하는 정부기관이며 외무부의 대외무역국 산하에서 방산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다.

스웨덴은 앞으로 일어날수 있는 어떠한 무력분쟁에도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기 위한 비동맹국이며, 이는 스웨덴이 수백년 동안 추구해온 독립적인 국가방위정책이다. 스웨덴은 자국의 방위수단과 자원을 자급할수 있는 큰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으며, 다른나라와 장기적인 군사동맹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현재의 상황에서 외국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방위지원 의존을 탈피하기위한 욕망은 독립적인 국가방위산업이 뒷받침될때만이 비로소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스웨덴 정부는 능력있고 효율적인 방위산업의 생존보장 방침을 지켜가고 있다.

방위산업이 생존하고 유사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이 수출을 해야 한다. 국지적인 수주량은 감소되

였으며, 스웨덴군의 주문기간도 점점 길어질 것이다. 이러한 공백은 오직 수출활동에 의해서만 메꾸어질 것이다.

무기수출을 허용하는 기본동기는 우리의 국가방위정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나라들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무기를 수출하는 강력한 경제적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스웨덴의 무기수출량은 연간 약 7천2백억원 정도이며, 이것은 전체 민간수출량과 비교할때 큰 부분이 아니다.

고용에 관한 논쟁도 스웨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약 3만명이 직접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근로자의 10%, 전체근로자의 1%에 불과하다. 물론 대부분의 주민이 방위산업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Karlskoga, Karlskrona, Eskilstuna와 같은 지방에는 국지적인 고용문제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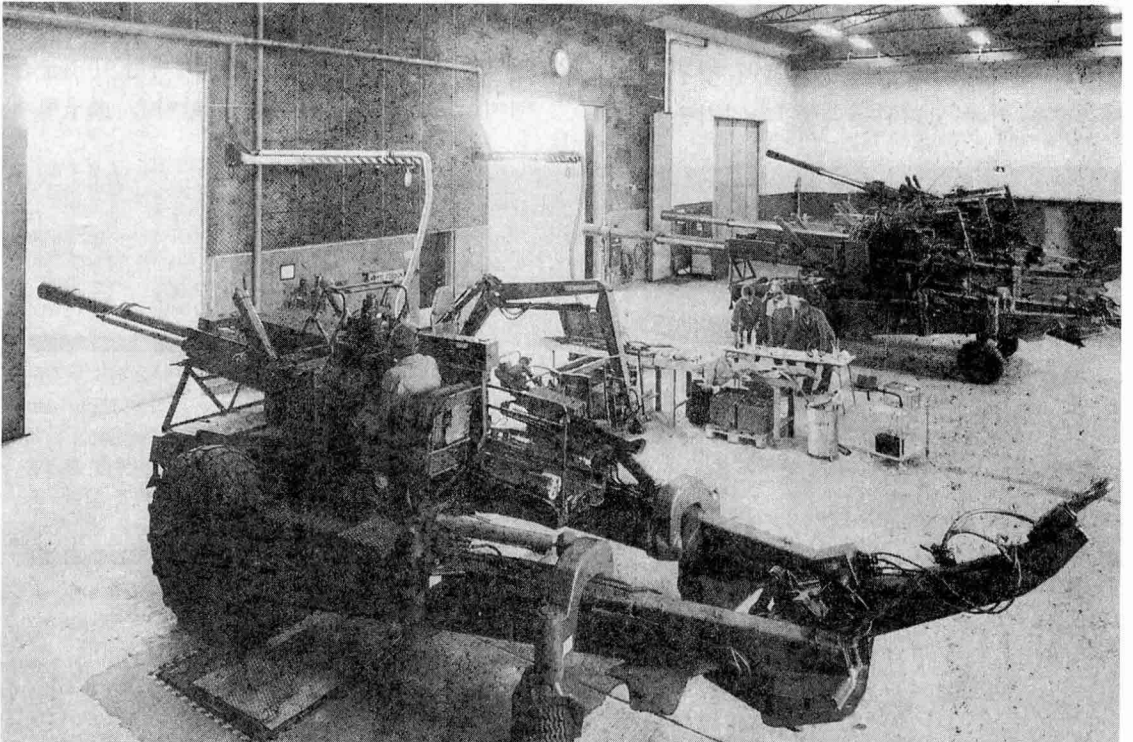
더우기 스웨덴은 모든나라가 자신의 방위문

제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 부유한 나라들은 그들 자신의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필요한 모든 무기를 제작할 것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들이 생산할수 없는 것을 구매해야 한다. 스웨덴은 방위물자의 약 30%를 수입하고 있다.

스웨덴의 중립정책이 무기수출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책이 우리가 수출대상국을 선정하는데 제한적이도록 유도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무기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중립정책의 신뢰도에 해를 끼치는 것을 원치않는 것이다.

스웨덴은 다른나라의 군사적인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2개의 초강대국이 포함된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통계적으로 볼때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는 매년 현존하는 전체 독립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40개국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였다.

印度로 선적될 FH-77 155밀리 곡사포. 1986년 인도와의 거래는 스웨덴 회사가 수주한 최대의 수출 계약이었으나 뒤에 이 계약과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가 인도의 내부 정치싸움에 연루되었을때 약간의 문제를 Bofors사에 가져다 주었다. 인도와의 곡사포 거래는 스웨덴 정부가 정부 對 정부의 MoU를 바탕으로 한 판매가 바람직하다고 느낀 몇가지 경우중의 하나였다.



스웨덴은 특정한 국가에 대한 판매는 실질적으로 대상수출품이 그 나라에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출허가에 많은 요소를 고려한다. 또한 특정 무기판매가 우리의 해외정책의 이해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외국인 정책을 매우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을 좋고 나쁜 나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무기판매와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상호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매우 존경하지만, 단지 그들나라가 우연히도 분쟁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무기판매 허용의 또다른 기준은 국내 구매 계획 완료후의 보상적 조치이다. 다시 말해서 스웨덴의 방위산업체는 기본적으로 스웨덴군을 위해서 군사장비를 개발해야 되지만, 잉여생산능력의 필요때문에 정부에서는 똑같은 체제의 수출을 허가 내지는 장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방산업체가 오직 수출만을 위해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다. 수출만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이 여러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스웨덴에서는 옳은 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어떤 특정한 수출신청에 대해서 정부가 의사결정을 위해 고려하는 것은 관련기술이 스

웨덴군에 중요한 분야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사일 기술은 중요하며, 분명히 스웨덴이 보유하려고 하는 기술이다.

또한 Bofors나 다른 업체들이 약간 앞선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같은 분야의 수출 신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모든 관련요소들을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노력한다. 각각의 경우마다 변하는 것은 고려요소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이다.

스웨덴은 방위물자 교역에서 「스웨덴이 신뢰할수 있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증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져 왔다. 매우 세심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본 지침은 만약 정부가 어떤 나라에 특정무기체계의 판매를 허용하면 우리는 그 고객이 계속해서 같은 장비의 탄약과 마찬가지로 예비부품, 정비시험 장비를 구매할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므로 고객은 그들이 구매한 스웨덴 물자를 계속해서 유지할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오래전인 1971년에 소개된 이 기준은 심지어 고객이 예비부품과 탄약을 요구할때



스웨덴 정부가 유지하려고 하는 High-Tech 능력과 수출을 통해 개발비의 일부를 충당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FFV AT-12 대전차포

수출용 방위물자를 별도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대신 스웨덴군을 위해서 개발된 것과 똑같은 무기를 수출시장에 내놓는 것이 스웨덴의 기본정책이다. 현재의 RBS-70 대체용인 RBS-90 SAM은 스웨덴과 노르웨이군에 거의 동시에 배치될 것이다



지역적으로나 당사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할때도 적용되었다.

마찬가지로 1971년 부터 시작되었으나 그렇게 자주 적용되지는 않는 또 다른 기준은 대규모 방위물자의 판매나 이전을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공동사업에 적용하는 수단으로, 스웨덴 정부가 상대국과 직접적으로 MoU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MoU를 통해서 스웨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계약의 충족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외국 정부에 보증하는 것이며, 단지 하나의 예상 장애물은 UN 안보이사회의 봉쇄조치이다.

이 절차로 잘 알려진 것은 인도와의 Bofors 곡사포 거래와 호주의 잠수함계획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2가지의 유사한 협정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한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원칙은 양국간 MoU 형태가 아니더라도 만일 정부가 판매를 허가했다면, 추가주문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은 공식적인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만일 어떤나라가 스웨덴 장비의 특정부품을 구매하도록 허가되었다면 이것은 추가 판매도 허용된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절차들은 스웨덴에서 제작된 체제의 복원이나 개선계획에 똑같이 적용된다.

군사장비와 국제공동계획 시행의 정확한 정의에 관한 새로운 법이 내년에 시행될 것이다.

국제공동계획과 관련해서 주된 논점은 공동으로 개발한 장비를 제3국에 수출할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시스템이 스웨덴의 독자성이 가졌다면, 다시 말해서 스웨덴이 70% 이상의 입력요소를 제공하였다면, 수출에 관해서 스웨덴이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스웨덴의 투입요소가 10% 미만일 경우 스웨덴으로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만일 투입요소가 서로 비슷할 경우에는 양측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공동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절차와 지침이 적용될수 있기를 바라지만, 만일 성공적인 프로젝트 결과가 스웨덴 방위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파트너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수출을 허용하는 나라들의 공동목록에 동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 「Sweden's Defence Export Policy」, 〈Miltech〉, 1990년 7월호
- ▲ 金瑩泰, 「스웨덴 육군 전력증강계획(1988~1992)」, 월간 〈국방과 기술〉, 1988년 2월호(통권 제108호)
- ▲ 金鍾明, 「1989년 북유럽 방산전시회(MILINF '89)」, 월간 〈국방과 기술〉, 1989년 10월호(통권 제128호)